

공동체은행 빈고 정관 초안

(부제:빈고에 관한 모든 것 or 아! 이렇게 재미있는 정관이: 빈고가 빙글빙글)

우리는 돈이 돈을 벌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의 질서에 반대하며 자본을 위한 저축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돈이 은행과 투자를 통해 금융자본이 되어 행하는 착취와 폭력을 막기 위해 자본을 위한 노동과 자본을 위한 소비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빈고에 출자합니다.

제 1 장 안녕! 빈고

제1조 (이름) 우리 조합은 '공동체은행 빈고(이하 빈고)'라고 합니다.

제2조 (조합의 취지 및 목적) 빈고취지문과 빈고선언문에 준거합니다.

제3조 (정관의 목적) 빈고 조합원들이 그동안 만들어온 약속, 활동해온 방식, 공감되어진 생각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현재 빈고의 운영형태를 조합원들 누구나 필요할 때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우주 어디든지,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면 사무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사업의 종류) 빈고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들의 출자를 지지하며, 잘 관리합니다.
2. 이용활동을 통해 자본의 논리에 반대하고, 공동체와 공유지의 확장과 안정을 돕습니다.
3. 빈고공동체 및 공동체의 구성원들간 협력과 연대를 활성화합니다.
4. 빈고 밖, 지구촌 곳곳의 연대가 필요한 곳에 연대합니다.
5.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 및 사업을 진행합니다.
6. 빈고와 닮은 금융 조직과 협력합니다.

제6조 (정관의 변경) 빈고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7조 (소식 공유의 방법) 빈고에서 조합원에게 공지할 일이 있거나 알릴 내용이 있을 땐 조합 홈페이지와 빈고 메일링, SNS 메신저 등 조합원들이 전달받을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연락) 출자금액, 이용안내를 비롯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안내와 통지 연락은 메일, 문자, 전화, 대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2 장 우리는 조합원

제9조 (조합원의 종류/구성) 빈고의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뉩니다.

1. 일반조합원: 특수조합원과 영구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은 일반조합원입니다.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연 조합비 1만 원을 납부하고, 출자금 잔액이 1만 원 이상인 일반 조합원의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정조합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조합원의 경우, 준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2. **특수조합원**: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경우 출자, 반환, 탈퇴 등의 권한을 대신할 대리인을 선정해서 특수조합원으로서 조합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조합원의 경우 조합비 납부는 면제되며,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 A.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조합원
 - B. 고양이, 개 등의 비인간 동물 조합원
 - C. 필요에 따라 복수의 이름으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D. 필요에 따라 타인을 대신해서 출자하기 위해 가입한 조합원
 - E. 단체의 이름으로 가입한 조합원등
3. 영구조합원: 출자금을 남긴 채로 사망, 실종 등의 이유로 연락할 수 없는 조합원의 경우, 탈퇴 처리 하는 대신 총회 의결을 통해 영구조합원으로 지정하고, 조합원의 이름과 출자금 및 출자지지금을 그대로 보존해서 기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망할 경우, 영구조합원으로서 잔여 출자금 및 출자지지금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빈고에 영구 보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의한 추가 출자는 가능하나 출자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조합비 납부 및 의결권 행사는 중지됩니다.

제10조 (**가입**) 빈고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빈고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빈고에 제출합니다.
3. 조합 가입시 가입출자금 1만 원(이상)과 매년 1만 원의 조합비를 빈고에 납입하면 정조합원이 됩니다.
4. 가입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서면으로 가능하며, 신청의 처리는 상임활동가가 담당합니다.

제11조 (조합원의 활동) 조합원은 출자자 = 이용자 = 연대자 = 운영자로서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원은 능력에 따라 빈고에 출자합니다.
2. 조합원은 필요에 따라 빈고를 이용합니다.
3. 조합원은 함께하고 싶은 지구촌 곳곳에 기쁘게 연대합니다.
4. 조합원은 원하는 활동을 통해 빈고의 운영에 재밌게 참여합니다.
- 5.

제12조 (조합원의 권리) 정조합원은 출자금액에 관계 없이 1인 1표의 동등한 권리를 갖고 조합의 정책 결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빈고의 출자, 이용, 운영 및 연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운영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빈고 운영활동가, 대표활동가 및 상임활동가, 감사활동가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5. 조합의 업무를 보고 받고 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은 빈고의 가치와 정신에 동의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조합원은 빈고 총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단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 정보 변경 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상임활동가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4. 출자 활동에 참여하고 이용금은 책임감을 가지고 반환해야 합니다.
5. 조합 운영에 관심을 갖고 조합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6. 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 14조 (탈퇴) 조합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1. 탈퇴하고자 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빈고에 탈퇴의 뜻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사전에 빈고의 모든 활동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활동이 정리되면 출자금을 환급받고 출자지지금을 지급받습니다. 빈고의 자산이 감소된 경우는 감소된 비율만큼을 제한 금액을 반환 받습니다.
4. 출자금의 액수가 크고 전월세 계약에 묶여 있어 즉각적인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출자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하고 적정한 이자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조합원의 제명) 다음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빈고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을 때,
2.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본 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3. 위 규정에 의해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최소 15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결 전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명된 조합원에게는 출자지지금을 제외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단 주소불명, 연락두절,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통지가 안되는 조합원은 1년 동안 휴면 조치하고 1년 후 제명한다. 1년의 휴면 기간이 지난 후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은 대손 충당금으로 빈고에 귀속됩니다.

제 3 장 빈고 운영 요모조모

제 16조 (구성) 조합은 감사, 공동체활동가, 대표활동가, 상임활동가, 운영활동가, 조합원으로 구성됩니다.

제 17조 (총회) 총회는 모든 조합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빈고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총회에서는 빈고의 사업, 예산, 의사결정 구조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총회를 열기 위해 매년 1회 회계 분기가 끝나기 전에 당기 상임활동가 및 참여를 원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정기총회 준비위원회를 꾸립니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됩니다.
4. 임시총회는 유효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나 운영활동가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합니다.
5. 운영활동가회의에서는 총회일 최소 15일 전에 총회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합니다.
6. 총회의 의결사항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출석한 유효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7. 모든 유효 조합원이 동등하게 1인 1표를 가집니다.

제 18조 (운영활동회의) 운영활동회의는 빈고의 운영을 담당하는 모임입니다.

운영활동회의에서는 주로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진행 및 공유합니다. 또, 빈고의 운영에 관해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제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조합원은 누구나 운영활동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 (운영/사업활동가) 운영/사업활동가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진행하는 활동가입니다.

제 20조 (공동체활동가) 공동체활동가는 빈고를 이용하는 공동체를 대표하여 빈고, 다른 공동체들과 소통 및 연대합니다.

제 21조 (상임활동가 및 대표활동가) 상임활동가와 대표활동가는 상시적으로 조합을 운영,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상임활동가 및 대표활동가는 총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상임활동가의 활동비는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제 22조 (감사)

1. 조합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
3. 감사는 매 분기별 조합의 사업, 회계, 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합니다.
4. 감사는 조합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운영활동가회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5. 운영활동가가 총회나 운영활동회의의 소집을 기피할 경우 감사는 총회나 운영활동가회를 소집합니다.

제 4 장 출자 활동에 대하여

제 23조 (출자활동) 출자는 예금과 달리 나의 돈이 어디로 갈지 직접 결정에 참여하는 실천입니다. 출자활동은 정말 필요한 사람과 일에 돈이 쓰이는지, 정당하게 이익과 손실이 분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조합원은 빈고의 출자활동가가 되어 공동체가 지속되고 확산되는데 기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유지를 누리고 상호부조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출자는 예금방식(은행 예금 등의 여유 자금을 출자로 전환하기), 적금방식(매월 일정 금액을 출자하기), 비율방식(수입의 일정 비율을 출자하기) 등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출자금의 반환요청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의 시기는 빈고의 상황에 따라 지연되거나 추가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24조 (출자지급금) 출자금에 대해서는 은행 예금이율 정도의 출자 지급금이 적립되며, 필요할 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25조 (공동체통장, 차입) 출자 외에도 수시로 출자와 반환이 가능한 공동체통장을 개설하거나, 빈고에 돈을 빌려주는 차입 등의 방법으로 빈고 공유자본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제 26조 (선물) 조합원은 마음에 따라 출자금을 빈고에 선물할 수 있고, 조합원끼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제 5 장 이용 활동에 관하여

제 27조 (이용활동) 금융자본이 이자수익을 버는 수단이 은행대출이라면, 빈고의 이용 활동은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빈고에 모인 돈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며, 자본에서 탈환한 이용활동수입을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1. 이용은 빈고 조합원의 권리이며, 출자활동을 통해 모인 빈고의 공유자본이 모두를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무입니다.
2.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임활동가와 상의하여 확정합니다.

제 28조 (이용분담금) 빈고의 공유자본을 이용해서 줄어든 월세, 절약한 이자 등의 이용수입은 모두를 위해 다시 빈고에 분담합니다.

제 6 장 연대 활동에 있어서

제 29조 (연대활동) 연대는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행동입니다. 빈고는 출자와 이용을 통해 기존 은행의 시스템에서 금융자본에 빼앗겼던 만인의 돈을 빼앗겼던 만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빈고와 함께 활동하는 것은 곧 연대자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연대활동을 위해 빈고의 잉여금 일부는 '지구분담금'과 '공동체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됩니다.

제 30조 (지구분담금) 지구분담금은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특히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모든 생명들과 나누는 돈입니다. 조합원은 각자가 연대하고자 하는 장소(공동체, 단체, 주체, 현장)에 대한 지구분담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이 지구분담금을 통한 연대 활동의 끝이 아니어야 합니다. 조합원은 연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제안해 주어야 합니다.

제 31조 (공동체기금) 공동체기금은 빈고를 이용하는 공동체들의 활동에 연대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응원하거나,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동체기금은 공동체들의 분담금을 통해 만들어진 빈고의 잉여금을 일부 적립하여 마련됩니다. 빈고를 이용하는 조합원이라면 연대가 필요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사업활동을 하자

제32조 (사업) 빈고는 출자, 이용, 연대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업활동을 진행합니다. 매 해 어떤 사업을 할 지는 매년 총회마다 결정됩니다. 결정된 사업은 총회에서 정해진 운영활동가가 해당 회기동안 맡아서 활동합니다. 운영활동가는 사업 활동을 하고, 활동 내용을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 33조 (사업의 제안) 빈고에서 진행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 조합원은 빈고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 34조 (사업 활동) 빈고는 새 공동체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거나, 조합원을 위한 교육 문화 사업을 진행하며, 지구의 이웃들이나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빈고는 이를 위해 수입의 일부를 일정하게 적립합니다. 적립금의 규모는 빈고의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활동가회에서 결정합니다.

제 35조 (조합원의 교육) 빈고는 신/구 조합원들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교육 활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육 활동의 시기는 상임활동가의 자율에 의해 정해질 수도, 조합원 혹은 운영진과 공동체들의 요청에 의해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 8 장 자산과 회계 (재정, 잉여금의 이월 및 손실금 처리)

제 36조 (수입) 빈고의 수입은 분담금, 조합비, 사업수입, 이자수입, 선물(후원금), 기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37조 (지출) 조합의 지출은 빈고 사업 및 운영비, 활동비(활동가의 급여 등), 사업비, 회의비, 이자비용, 기타 지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39조 (잉여금의 처리) 조합은 총회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정리하고 공동체기금, 지구분담금, 출자지지금, 활동가기금의 항목으로 적립합니다. 항목의 삭제와 추가, 각 항목의 적립 비율 등은 총회에서 논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38조 (잉여금의 이월) 조합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잉여가 남을 시 적립금으로 분배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제 39조 (손실금 처리) 빈고를 운영하다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지는 운영활동가회에서 논의하고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제 40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제 9 장 빈고가 마무리 된다면... (☺-☺)

제 41조 (해산)

1. 빈고는 총회에서 의결할 경우 참석조합원 2/3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2. 해산의 이유로는 빈고의 합병/분할, 파산, 기타의 사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해산을 하게 될 경우 대표는 즉시 모든 조합원들에게 해산에 대해 알려야합니다.

제 42조 (청산인) 해산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인은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제 43조 (청산시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진 채무를 포함하여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각자의 출자금 및 출자지지금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합니다. 그외의 잔여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선물합니다.

1. 지역사회
2. 빈고와 비슷한 다른 단체
3. 환경단체
4. 공유지

5. 빈고의 연대단체

부 칙

제1조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활동가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제2조 이 정관은 2019년도 빈고정기총회에서 조합원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